

노인요양시설 인보마을 입소계약 규정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인보마을 입소계약 규정)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8호
(2014. 9. 19. 개정)

계 약 당 사 자				
이용자 (갑)	성명		등급 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
	주소			
	기타	☐ 일반 ☐ 60%경감대상자 ☐ 40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사회복지법인천주교 인보회 인보마을	시설 종류	노인요양시설
	시설장	곽애리 (인)	연락처	031-339-9140
	주소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42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 신원인수인	성명	(인)	관계	
	생년월일		연락처	
			E-mail	
	주소			

제1조(명칭) 인보마을 입소계약 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상의 명칭을 이용자(입소자) ‘갑’ 이고, 제공자는 인보마을 노인요양시설로서 ‘을’ , 보호자 1 ‘병’ , 보호자 2 ‘정’ 으로 정의한다.

제2조(목적)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3조(목적시설의 표시)

건축물, 기구, 기타 조작용물과 더불어 인보마을의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‘갑’ 은 ‘을’ 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시설 상황에 따라 ‘을’ 이 지정한 호실에서 기거하도록 한다.

제4조(계약당사자)

이용자(입소자) ‘갑’ 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‘갑’ 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 및 후견인(이하 ‘병’ , ‘정’)으로 하되, ‘을’ 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한다.

1. 배우자
2. 직계비속
3. 상기 1,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 및 후견인

제5조(계약자의 의무)

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‘갑’ 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
 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 -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 -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 -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 - ⑥ 신원인수인의 지정
2. ‘을’ 의 의무
 - ①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
 - ②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 -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·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
 -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⑤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

3. ‘병’ 의 의무

- ①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④ ‘갑’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신원인수인을 ‘을’ 에게 통보
-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6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(서비스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.)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“을” 은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‘갑’ (또는 병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또는 병 ‘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)
- ⑤ 계약 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7조(배상책임)

- 1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④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갑” 이 받을 사고나 재난에 대해 “을” 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- ① 천재지변,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, 도난, 혹은 외출 중의 불의의 사고에 의해 “갑” 이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한 사고.
 - ② 입소자 “갑” 본인의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 등의 안전사고

- ③ 공동 간병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
- ④ “갑”의 개인 질병의 악화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

제8조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

- ① 입소정원은 80인으로 한다.
- ② 서비스(수급자) 모집 방법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시설등급(1~5등급)을 받은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 - 인보마울 홈페이지(www.inbomaul.or.kr)
 -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
 - 기관 홍보물, 유선, 방문, 대기자 기록 등

제9조(시설의 관리 운영)

- ① ‘갑’은 시설장(원장)과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.
-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 “을”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를 “갑”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.
- ③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응급상황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상시개방 할 수 있다.
- ④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건물 외부로의 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,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은 협력병원(또는 축탁의사)지정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등을 배치하고, ‘갑’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에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시 지체 없이 ‘병’에게 통보 한다

제11조(치료)

- ① ‘갑’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‘을’이 정한 병원이나 축탁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약물치료 외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에서 가능한 치료는 ‘을’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중환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책임 하에 ‘을’의 지정병원이나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선택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.

제12조(임종 및 장례)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1.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-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‘을’은 임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.
- ③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2. 무연고자

-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- ② ‘을’은 임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.
- ③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1개월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3조(식사 및 간식)

‘을’은 식당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 및 1일 2회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하며,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)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또한 전염병 등으로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외부전문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다.

제14조(생활상담 조언)

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한다.

제15조(요양실의 배정)

‘갑’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을’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.

제16조(용도의 제한)

- ① ‘갑’은 요양실을 주거에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- ② ‘갑’은 요양실 이외의 공용부분을 ‘갑’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

에 이용할 수 없다.

제17조(동물 사육의 금지)

‘갯’은 거실 또는 시설 내 어느 곳에서도 ‘을’이 제한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.

제18조(원상회복 및 보상의 의무)

- ① ‘갯’ 또는 ‘병’, ‘정’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‘갯’으로 인해 발생한 오손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가 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‘을’이 대신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- ② ‘갯’이 입소 중,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법적인 책임은 ‘갯’과 ‘병’이 부담한다.

제19조(‘을’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)

‘갯’의 보호자(‘병’, ‘정’), 신원인수인(이하 ‘계약당사자’ 등이라 함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“을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.

- ① 계약당사자 등의 이름,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
- ② 계약당사자 등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
- ③ 계약당사자 등이 강제집행, 파산선고 등 보호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

제20조(면회 및 외출·외박)

- ① ‘갯’의 면회는 매일 10:00 부터 16:00까지 시행한다.
(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 우려가 있으면 면회 및 외출, 외박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. 단, ‘갯’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.)
- ②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갯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하며 거주실 내 음식물 반입은 엄격히 금하며 면회실 내에서만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.
(단, 전염병 유행시기에는 음식물 반입금지)
- ③ 외출·외박은 최소 3일전 신청하여 ‘을’의 승인 후 시행한다. 외박시 상급침실료는 ‘갯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④ 외박은 입원일수 포함 최대 10일까지만 시행가능하며, 10일을 넘길 경우와 잦은 외박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‘을’은 ‘병’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퇴소 조치 할 수 있다.
- ⑤ 면회 및 외출·외박은 ‘갯’의 건강과 정서 상태에 따라 불허할 수 있다.
- ⑥ ‘갯’이 ‘병’과의 면회·외출·외박 중 식사, 진료, 신체적 변화 등의 사항이 있었을 경우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외출·외박으로 발생한 모든 변화에 대한 책임은 ‘병’에게 있다.
- ⑦ 전염병 등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관공서의 지시 및

시설장의 결정에 외출, 외박, 면회 등은 제한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(단, 응급 상황 또는 병원진료는 예외로 한다)

제21조(보호자간담회)

‘을’은 이 계약 이행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보호자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2조 (특별한 보호)

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신체적 제한 등 특별서비스 기준

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
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

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
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
④ 합숙용(2인용)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용 상급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(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)

2.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기관지 흡인(석션)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

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

제23조(입소물품)

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 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24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“병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,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25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이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26조(기록 및 공개)

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입소자(어르신)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)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
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.
(납부일이 공휴일 경우 그익일로 한다.)
- ②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(식재료비·간식비·상급침실료, 이미용비, 약제비, 의료비)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⑤ 이용료는 월 단위,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위생재료 및 유료서비스 이용부분은 후불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이용료의 과소납 또는 과다납부액이 있을 경우, ‘병’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‘갑’의 특별한 반환요구가 없을 시는 전월부족분에 충당하거나 익월납부액에 충당할 수 있다.
- ⑦ 상급침실이용료(비급여)는 외박·입원 상관없이 월약정액의 부담원칙으로 한다. 단, 퇴소 해당 월일 경우는 1일 이용 계산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.

(이용료의 변경방법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(입소자)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(처리 절차)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우선 유선으로 알리고, 입소비 불입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 날인하여 부본 제공 후 보관처리 한다.

제28조(병원진료비·입원비·간병비용 수납)

- ① ‘갑’이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, 수술 시 비용은 모두 ‘병’의 부담하며, 병원에 직접 납부한다. ‘을’은 ‘갑’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 외래진료의 경우 가족이 동행하여 진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‘병’은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경우 ‘을’이 ‘병’을 대신하여 병원에 동행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직불카드 사용을 “을”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- ④ ‘갑’이 10일 이상의 장기 입원시 ‘병’은 ‘갑’을 퇴소토록 해야 하며 제20조 ④에 의거하여 “을”은 퇴소 여부에 관하여 ‘병’에게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29조(비용의 조정)

‘을’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동과 물가의 변동(급식비, 관리비, 난방비, 공공요금, 수용경비등)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제30조(계약 해지 요건)

1. ‘갑’의 해지

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지 일을 정하여 ‘을’에게 알려야 하며, 계약 해지 일까지 퇴실해야 한다.

2. ‘을’의 계약해지

‘을’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해야 하며, ‘을’에게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‘갑’은 14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.

- ①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.
-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③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- ④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(음주, 흡연, 문란행위, 폭력, 폭언 등)
- ⑤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
(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, 신상정보 등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)
- ⑥ 질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(10일 이상의 장기입원)
- ⑦ 질병의 호전으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
- ⑧ 기타 본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31조(계약의 종료) 이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.

- ① ‘갑’이 사망했을 경우
- ② ‘갑’ 또는 ‘을’, ‘병’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

제32조(퇴소)

- ① ‘을’은 제30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의사를, 서면이나, 유선으로 ‘갑’(또는 ‘병’, ‘정’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“갑”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‘갑’이 지정한 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제33조(불법 체류에 따른 배상금)

‘갑’은 계약종료일까지 퇴실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명도일까지 발생한 운영비 전액을 ‘을’에게 납부해야 한다.

제34조(재산의 처리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이 제30조 각 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적인 사물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보관해야 하며, ‘갑’의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.
- ② ‘갑’의 신원인수인은 전 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연락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해야 한다. 14일이 지나도 존치된 소유물에 대하여는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“을”에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귀속되며 이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.
- ③ ‘갑’의 직계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유류(잔여)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5조(채무의 해결)

‘을’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는 ‘갑’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되 년 15%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며 반환금이 없을 경우 ‘병’과 ‘정’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며,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소액심판제도에 따른다.

제36조(반환금 및 반환금 수취인)

‘갑’이 퇴소할 경우 월 이용료 환불은 퇴소 당일을 포함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금 수취인에게 환불한다.

- 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계약 시까지 반환금수취인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.
- ② 동조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은 제38조의 신원인수인이 이것을 겸할 수 있다.
- ③ 동조 제1항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지장(반환금 수취 불가 사유 등)이 발생한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, 동시에 ‘을’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반환금 수취인을 정해야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전 각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반환금수취인으로 ‘을’를 지정하였을 때는 반환금을 ‘을’의 목적사업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37조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1. 권리 : 계약서상의 신원인수인만이 ‘갑’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.
2. 의무 : 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신원인수인 1인을 계약 시까지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.
② 신원인수인은 ‘갑’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.

제38조(신원인수인의 변경)

- ① ‘을’ 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신원인수인이 제19조 2,3항에 해당하거나 기타 ‘을’ 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에 대하여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은 ‘을’로부터 전항에 규정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‘을’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.

제39조(이용계약서의 해석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제40조 (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)

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승인을 얻는다.

제41조(규정 외 조항)

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은 “갑” 과 “을” 또는 “병” 상호간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기로 한다.

제42조(노인인권보호지침서)

계약체결시 노인인권보호지침서를 계약자(보호자)에게 제공한다.

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입소함에 있어 기명날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
그 증명으로서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202 년 월 일

계약자	이용자 (갑)	(서명 또는 인)
	시설대표 (을)	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 인보마을 시설장 (인)
	보호자 (병)	(서명 또는 인)

□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첨부 입소비불입약정서(별지첨부)
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 비용공단 80%	1	90,450	2,170,800	90,450원 * 80% * 30일
		2	83,910	2,013,840	83,910원 * 80% * 30일
		3.4.5	79,240	1,901,760	79,240원 * 80% * 30일
개인부담 비용	요양급여 비용본인 20%	1	90,450	542,700	90,450원 * 20% * 30일
		2	83,910	503,460	83,910원 * 20% * 30일
		3.4.5	79,240	475,440	79,240원 * 20% * 30일
비급여 비용	식재료비	1식	4,000원	360,000	4,000원 * 3식 * 30일 = 360,000원
	간 식	1회	1,000원	60,000	1,000원 * 2회 * 30일 = 60,000원
	상급침실 이용료	1인실		600,000	20,000원 * 30일 = 600,000원
		2인실		510,000	17,000원 * 30일 = 510,000원

※ 기타 경감대상자일 경우, 개인부담비용 8% 혹은 12% / 공단부담비용 92% 혹은 88%

※ 의료비, 약제비, 이·미용, 원거리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봉사자활용 시 재료비만 지불 가능함.

※ 상급침실 이용료는 외박, 입원 상관없이 월이용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퇴소 해당월일 경우 1일 계산 산정.

※ 매월 입소납입금은 위 지침에 따라 청구서가 발급됩니다.

수급자 성명

생년월일

수급자 거실

등 급

본인은 인보마을에 입소를 희망하며 입소비 납부는 매월 선납입(10일)으로 하고 월납
입금은 입소자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등급이 변동되거나 물가상승에 따라 변경된 금액
을 납부하며 계약해제 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할 것을 약정합니다.

년 월 일

수급자 : (인)

보증인 : (인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생년월일 :)
주 소 :

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수 급 자 : (인)
보 호 자 : (인)

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 확인서
및
노인인권(학대) 보호지침서 제공

수급자	성 명			
보호자	성 명	(인)		
	연락처		입소자와의 관계	

○ 상기인은 인보마을 입소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을 발급받고, 노인인권(학대) 보호지침서를 제공 받았습니다.

20 . . .

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

인 보 마 을 곽 애 리 (인)

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폭언, 폭행, 성희롱 발생
예방 수칙 및 상호존중 수칙 제공

수급자	성 명			
보호자	성 명	(인)		
	연락처		입소자와의 관계	

- 상기인은 인보마을 입소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을
발급받고,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서를
제공 받았습니다.

20 . . .

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

인 보 마 을 곽 애 리 (인)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
수급자	성 명			
보호자	성 명			
	연락처		입소자와의 관계	

- 상기인은 인보마을 입소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을 발급 받고,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제공받았습니다.

20 . . .

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

인 보 마 을 곽 애 리 (인)

